

< 퇴직공제 근로일수 축소신고 자율개선 기간 운영 >

“근로일수 축소신고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 하세요!”

- ❖ (목적)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공제 신고를 실제 근로일수보다 적게 '월 7일 이하'로 축소신고 하는 사업장에 대한 개선기간 운영
 - ※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등 보험 가입기준 변경: 월 20일 이상 --> 월 8일 이상
 - ☞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공제를 7일 이하로 축소신고 함에 따라 근로자 민원급증

- ❖ (운영기간) '21. 4. 5. ~ '21. 5. 31. (2개월)

- ❖ (조치사항) 전체 공사기간 중 근로자별 신고일수를 확인하여 실제 근로일수보다 적게(축소) 신고 된 경우, 퇴직공제(WEDI) 시스템을 통해 소급신고 및 납부 조치
 - ※ [예시] A근로자 '20.1월 실 근로일수 20일 -> 퇴직공제 신고일수 7일
 - ☞ 축소 신고일수(13일=20일-7일)를 해당 근로년월('20.1월)로 추가(소급) 신고

- ❖ (미조치 사업장) 자율개선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문 점검 후 축소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
 - ☞ 필요 시 발주기관 행정지도 및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추진

건설근로자법 개정('20.5월 시행)으로 근로일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(300만원이하)와 근로자의 직접신고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. 사업자가 근로일수 누락 시 공사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 및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- ❖ (당법인 의견) 2개월 이상 일률적으로 7일 이하로 퇴직공제 신고시 점검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, 근로일 신고(4대보험 및 퇴직공제)가 적합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의 관리 지침 검토가 필요함. 퇴직공제회의 점검에 따른 미개선시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대상이 될 경우,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신고에 따른 과태료 리스크 발생함